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78
------	------

2017. 4.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4월 11일, 문영민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4.20)상정, 제안설명,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의 임명에 따른 서류 제출 기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

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변동 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시 변동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나. 경매사의 임면절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법 제2조 제13호).
-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2명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 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에 그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7조 제1항,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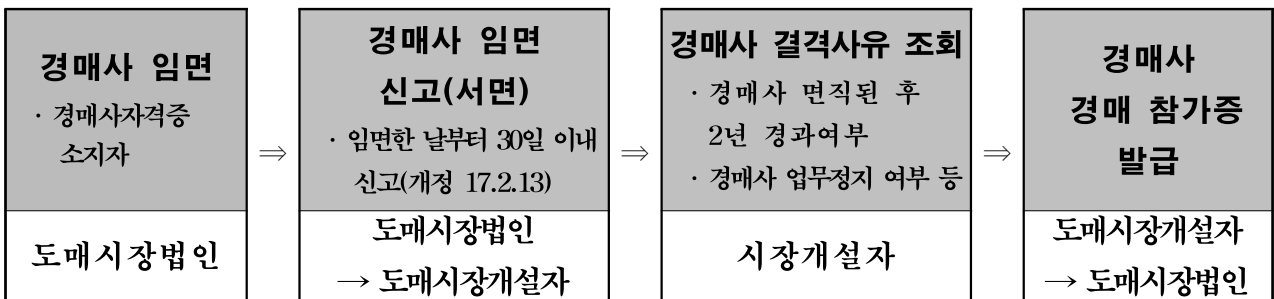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청과, 수산, 축산, 양곡 부류별로 연간 거래규모에 따라 경매사의 확보기준을 정하고 있음(붙임자료 2 참조)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고 경매사의 임면(任免)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경매 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음.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경매사 현황은 붙임자료 3 참조)

<경매사 임면 관련 절차>



다. 종합의견

-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2017년 2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개설자에 대한 경매사의 임면신고 기간이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었음.

-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에서 경매사의 임면신고 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에 따른 업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한 2008년의 시행규칙 개정 사례를 고려하면 동일한 취지로 추정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도매시장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익적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
----------	------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11일

발 의 자 : 문영민, 김제리, 김정태,
김기대, 최판술, 박호근,
이순자, 오봉수, 이현찬,
서윤기, 김창수 의원(11명)

1. 제안이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의 임명에 따른 서류 제출 기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변동 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u>15일</u>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매사 관리) ① ----- ----- ----- ----- <u>30일</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